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경미한 수익사업 대행사업자
공모지침서

2024. 02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일반사항	4
1. 사업자 공모 지침의 목적	4
2. 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사업개요	4
1. 사업명	4
2. 사업목적	5
3. 사업기간 및 대상	5
4. 사업조건	5
5. 사용료 및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 납부	6
6. 관리비 등의 납부	6
제 3 장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6
1. 사업자공모 일정	6
2. 신청자격	7
3. 자격제한	7
4. 신청서류	7
5.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제출	7
6.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내용	8
7.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효력	8
8.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무효	8
9. 사업신청 시 유의 사항	8
10. 계약이행보증금	9

제 4 장 사업시행 주요 조건	9
1. 공공성 확보 방안	9
2.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9
3. 사업 제한사항	10
4.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과 계약의 해지 등	10
5. 기타사항	11
제 5 장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평가 및 대행사업시행자 선정	11
1. 평가일반	11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
3. 대행사업시행자의 선정	12
<첨부#1> 경미한 수익사업 대상 내역.....	13
<첨부#2>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4
<첨부#3> 사용료납부계획서.....	22

제 1 장 일반사항

1. 사업자 공모 지침의 목적

본 사업자 공모·지침의 목적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구간의 역사, 차량 등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경미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대행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조건, 신청자격 및 사업자제안서류 작성지침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본사업”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물을 활용하여 임대시설에 대한 경미한 수익사업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행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법인을 말한다.
- (3)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대행사업신청자의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대상자 중 최우선순위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 (4) “대행사업시행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적격업체로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 (5)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라 함은 대행사업신청자가 당사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6항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목차 (첨부#2)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말한다.
- (6) “사용료”라 함은 계약당사자 또는 대행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 월별로 당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VAT 별도)
- (7) “경미한 수익사업대행사업운영권”이라 함은 대행사업시행자가 계약기간 동안 경미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 2장 3.(2)의 사업대상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8) “공익적 사용”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주), 정부 또는 용인시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개요

1. 사업명

본 사업의 명칭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경미한 수익사업 임대시설 대행사업”(이하 “본 사업”)이라한다.

2. 사업목적

당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용인경량전철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과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 (1) 경미한 수익사업 최적화를 통한 용인경량전철 이미지 창출
- (2) 역사의 임대시설에 대한 경미한 수익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3. 사업기간 및 대상

본 사업의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기간 : 경미한 수익사업 영업개시일로부터 3 년
- (2) 사업대상 : 임대시설

건 명	사업물량	규격	사업설명회	경미한 수익사업대 행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
용인경량전철 경미한 수익사 업 대행	* 임대시설 - 편의시설 ; 1 개소 (시청 · 용인대역)	* 임대시설 - 편의시설 (무인 자판기, 무인 점포 등) ※ 단, 유해성 물품 및 성인 용품 판매 등은 제외	공모지침서로 같음	2024. 03. 04 16 시

4. 사업조건

가. 일반사항

- (1) 대행사업시행자는 채택된 경미한 수익사업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되, 제 4 장 사업시행 주요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사업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착공, 시공, 준공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 및 구체적인 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시 상호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대행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3) 대행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계법령 및 당사와 협의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4) 대행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영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당사에 납부하는 보증금 및 사용료에 관한 금액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당사는 제 4 장의 4. 사업제한사항에 따라 사업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 (6) 당사는 경미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공간(영업장소)을 제공하되, 사업에 따른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는 대행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다. 다만, 대행사업시행자간 상호 협의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무상 기증할 수 있다.

나. 전대 및 양도 금지

대행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권을 제 3 자에게 권리이전,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담보물권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사용료 및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 납부

- (1) 모든 대행사업시행자는 사용료 납부계획 및 산출근거를 총계약기간(3년)에 대해 월별로 작성하며, 가격산정기준일은 2024년 01월 31일로 한다. 사용료 납부는 용인경량전철 경미한 수익사업의 대행계약일 30일 이후부터 대행사업신청자가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상에 제시한 월별납부금액(협상에 따라 계약 시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에서 매 분기 단위로 선 청구하며, 대행사업시행자는 당사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은 계약만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 시 사용료 지급이행보증과 시설물의 철거이행보증 등을 위해 대행사업신청자가 3년간 납부해야 할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에 대한 현금 또는 정액 보상의 특약이 있는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지급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당사)가 지급이행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여야 한다.
- (4) 대행사업시행자는 사용료와 보증금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추가 사항은 계약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리비 등의 납부

- (1) 대행사업시행자는 수도료, 통신료, 기타 제비용 등은 당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행사업시행자와 한국전력간에 “전기사용 신청계약”에 따르거나,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관리비 및 기타 제반 비용(제세공과금 포함) 등의 모든 책임은 대행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2)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시설물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한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물 등은 대행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1. 대행사업시행자 공모 일정

- | | | |
|---------------------------|---|--------------|
| (1) 대행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 | 2024. 02. 19 |
| (2)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접수마감 | : | 2024. 03. 04 |
| (3)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 | 2024. 03. 14 |
| (4) 사업계약 협상 완료 | : | 2024. 03. 23 |
| (5) 계약체결 | : | 2024. 04. 04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1) 대행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 (2) 대행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신청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대행사업신청자에게 있으며,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혹은 무효처리 한다.
- (4) 단, 우선 입찰 적용(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 기준 입찰 요건 충족 시)
※ 관련 근거 -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3. 자격제한

- (1)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사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부정당업자(입찰, 담합 등)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 (2) 대행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대행사업신청자가 될 수 없다.

4. 신청서류

- (1) 사업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사업자 공모참여신청서(첨부#2 서식 1 참조)
 - 2)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첨부#2의 6 항 목차참조)
- (2) 대행사업신청자는 사업자 공모참여신청서 및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당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 및 참고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제출

- (1) 대행사업신청자(법인)는 사업 입찰 시 신청서류 및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 (2) 대행사업신청자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당사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 (3) 당사의 필요에 따라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 (4)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서명자 및 제출자가 공모참가자의 대표가 아닐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6)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대행사업신청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7) 대행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현장조사 등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8)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대행사업신청자

가 부담하며, 대행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 제안서의 작성·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당사에 청구할 수 없다.

(9) 제출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6.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내용

(1)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첨부 #2의 6항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목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7.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효력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유효기간은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사업제안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8.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무효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 한다.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 2) 마감기한 이후 당사에 도착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 3) 동일인이 내용이 상이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2부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 4) 허위로 작성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 5) 기타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건 등을 위반 또는 충족하지 못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 6) 본 입찰에 담합 등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지 본 계약 체결이 완료된 시점에도 당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9. 사업신청 시 유의 사항

- (1) 당사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제출마감 전 본 공모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사항을 모든 대행사업신청자들에게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행사업신청자들이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대행사업신청자본 지침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 의견을 따른다.
- (3) 대행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가 사업 지연으로 입게 되는 손해 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4) 대행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당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 (5) 본 지침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당사에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행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다.

10. 계약이행 보증금

- (1)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 관리비 납부 등 모든 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기간(3년)에 대해 대행사업신청자가 3년간 납부해야 할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에 대한 현금 또는 정액 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1)항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당사)가 지급이행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여야 한다.
- (3)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당사에게 귀속된다.
- (4) “대행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성격의 벌과금으로써 “당사”에게 전액 귀속된다.

제 4 장 사업시행 주요 조건

1. 공공성 확보 방안

- (1) 대행사업시행자는 용인시 및 당사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시민편익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용인시 및 당사가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당사의 회사홍보나 공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대행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 (1) 본 사업 계약시설물의 설치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전기, 설비, 통신, 지장물 등)는 대행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공사에 따른 지장물 처리 및 지장물로 인하여 연계된 기타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행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전기 등 기존 설비 용량의 제한에 따른 대행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2) 본 사업시행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행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3) 대행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설치공사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 기타)일체를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 (4) 당사는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대행사업시행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위 2호의 인·허가 및 착공계와 공사 예정표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 후 착공하여야 한다.
- (6) 대행사업시행자는 사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용인경량전철 경미한 수익사업 영업개시 10일전까지 당사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확인 후 경미한 수익사업의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때 준공확인에 필요한 현장 확인,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당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본 사업 계약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행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요구 시에 원상복구 조치를 대행사업시행자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제한사항

-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은 당사와 대행사업시행자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용인경량전철(주)는 해당 채택사업을 제한 할 수 있다.
 - 1) 용인경량전철 고객의 이용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 2) 용인경량전철 시설물의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광고물 심의규정을 벗어나는 상업광고, 음란물 및 선정적인 광고물 등
 - 3)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
 - 4) 주무관청의 요구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업
 - 5) 용인경전철 활성화 업무협약 등 향후 지속된 용인경량전철의 활성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위(1)항의 제한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추가될 수 있다.

4.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과 계약의 해지 등

- (1) 사용료 지급이행 보증금
 - 1) 대행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적기 시행과 중도 사업포기 방지, 또는 사용료, 전기료, 연체료, 원상복구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경미한 수익사업 영업개시 7영업일 전 까지 현금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계약 시 정한 기간 이상 연체하는 등 대행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당사가 입게 되는 모든 손실 및 손해를 공제한 후 반환 한다.

- 3) 제 1)항의 지급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지급이행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여야 한다.
- 4) 대행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제세공과금 납부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 1) 대행사업시행자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
 - ② 대행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당사가 승인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한 때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
 - ⑤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90 일이상 연체하였을 때
 - ⑥ 사업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사업운영권의 타인 양도 등 기타)
 - ⑦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 증상모략, 비방 등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⑧ 기타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당사가 인정할 경우
- 2) 대행사업시행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지여부 및 위약금의 수준을 결정하며, 대행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5. 기타사항

- (1) 본 사업공모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는 업무분담, 유지관리 등의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2) 대행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시설물과 이용시민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대행사업시행자는 원상복구 및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5 장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평가 및 대행 사업시행자 선정

1. 평가일반

- (1) 평가는 대행사업신청자가 기한 내 제출한 유효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 (2) 대행사업신청자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점수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 (3) 당사는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당사의 예정가액을 만족하는 대행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 대행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각 사업범위 별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대행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2)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용료를 높게 제안한 대행사업신청자를, 사용료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1 차년도 사용료를 높게 제안한 대행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하며, 취소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당사와 기타 제 3 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 (4) 단독 제안일 경우에는 당사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및 대행사업신청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5) 모든 대행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사업계약협상을 통해 본 지침과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대행사업시행자의 선정

- (1) 당사는 사업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내지 계약체결 결렬 시에는 차순위, 차하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첨부#1> 경미한 수익사업 대상 내역

1. 임대시설물 계약수량

역명	합계	임대시설(cm)
시청·용인대역	1	600x285=17.01 m ²

2. 위치 사진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 적용원칙

- (1) 본 작성지침은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서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은 대행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 (2)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자 공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평가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허위사실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당사가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경우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허위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행사업신청자는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배상하고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 (4) 또한, 계약 체결한 이후에도 위(3)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구성 및 분량

- (1)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부속서류, 가격제안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제 1 권 :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사업제안 내용 20-30 쪽 내외)
 - 2)제 2 권 : 부속서류(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
 - 3)제 3 권 : 사용료제안서(봉인 후 별도 제출)
- (2)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1)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행사업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2)각종 증명서는 2023. 11. 30.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2023. 11. 30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제 1~2 권은 3 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권별 원본 1 부는 대행사업신청자 대표의 사용인감을 각 장의 간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및 도서의 원본파일은 전산파일(CD 또는 USB)의 형태로 2 장 제출한다.

3. 규격 및 글자크기

- (1)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윈도우용 프로그램 (한글 2003~2007, Ms-Word, Excel, Powerpoint 2003~2007)으로 작성한다.
- (2)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210 x 297mm)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기타 규격을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다.
- (3) 제본 또는 바인더 제작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수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한다.

4.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1)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 (2) 화폐단위는 원화로 한다.
-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한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 (1)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제출된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 (3) 당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업신청자가 진다.
- (5)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작성·제작·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대행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당사에 청구 할 수 없다.

6.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목차

아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항목 세분 또는 추가 가능하다.

가.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제 1 권)

제 1 장. 제안서의 표지

제 1 절. 서약서

제 2 장. 일반현황 및 재무상태

제 1 절. 일반현황(재무능력 - 최근 3 개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 2 절. 제안개요

제 3 절. 사업 수행능력(※실적증명원 및 이와 동등한 효력의 증빙 제출)

제 3 장. 사업계획

제 1 절. 운영 계획

(1) 사업유형별 형태

〈#첨부 1〉 경미한 수익사업기준 내역을 근거로 자율제시(가격산정기준 : '24. 01. 31)

제 2 절. 시설계획

(1) 설치계획

: 간략한 설치개요와 사례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할 것

(2) 마감재 계획

나. 부속서류(제 2 권)

: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

※ 부속서류 미제출한 경우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 평가시 “0 점”처리

다. 사용료제안서(제 3 권)

: 봉인 후 별도 제출

: 사용료(가격산정기준 '24. 01. 31) 제시는 계약기간(3 년)에 대해 월별, 연도별로 표기

7. 제출방법 및 질의

(1) 사업자공모참여신청서 및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후 제출마감일(2024. 03. 04) 16:00 시 까지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접수 (당일 도착 분에 한 함)

(2)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 용인경량전철(주) 경영기획실

• 전화 및 팩스 : ☎031) 329-3500(팩스 031-329-3599)

〈서식 1〉

사업자 공모 참여 신청서			
회 사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최대출자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2024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경량전철^(주)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5>	1 부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 부	7. 사업수행조직도<자유서식>	1 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8. 계좌거래이체약정서<서식 6>	1 부
4. 서약서<서식 2>	1 부	9. 경미한 수익사업대행사업제안서<목차참조>	1 부
5. 대행사업신청자 현황<서식 3>	1 부		

서 약 서

본 대행사업신청자는 경미한 수익사업대행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행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대행사업신청자는 업체선정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대행사업신청자가 대행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 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행사업신청자 현황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납 입 자 본 금		결 산 일		
총 자 산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 한 · 정 지	기간			
	사유			

※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 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최근 3 년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최근 3 년치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 포함) 첨부)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 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용인경량전철(주)(이하 “귀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경

미한 수익사업 대행사업자 공모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문화를 조성하고 청
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제안내용의 제한이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등 본 사업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선정 취소,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가
해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용인경량전철(주)귀하

계좌입금거래 약정서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귀하

귀 당사와 계좌입금 거래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입금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사용인감대조필	
---------	--

거래은행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좌입금 방법	당좌이체, 온라인입금, 지로입금, 우편대체 (희망하는 이체방법에 ○표)

■ 계좌입금 거래은행

【계좌이체 약정】

- 1) (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수수료 부담) 계좌이체 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4)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 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면책)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 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신고사항의 변경)
본 약정서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 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입금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7)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해지) 본 계좌입금 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 통보는 당사가 서면 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9) (기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사용료납부계획서

사용료 납부계획서				
공 고 번 호	제 호			
사 업 명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경미한 수익사업임대시설대행사업			
제 안 금 액 (3 년 총사용료)	금 원정 (₩ , VAT 포함)			
사 업 기 간	3 년 (36 개월)			

구 분	사용료(천원)			비고
	계	편의시설	자판기	
1 차년				
2 차년				
3 차년				
총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1. 사용료에 대한 월별 납부금액
2. 대행사업신청자 자율제시 채택사업 부문 사용료 월별, 연도별 납부금액

2024 년 월 일

제 안 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인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